

#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mall Libraries

장 덕 현(D. H. Chang)\*\*

### < 목 차 >

I. 서론	2. 조사결과 및 분석
II. 작은도서관의 의의	IV.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개선 방안
1. 작은도서관의 개념	1. 자료구입 예산 측면
2. 작은도서관의 발전 배경	2. 자료구입 과정 측면
3.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	3. 운영체제 측면
III. 조사결과 및 분석	V. 결론
1. 자료수집	

### 초 록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과정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조사연구이다. 장서의 중요성과 주로 소규모장서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작은도서관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작은도서관은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 전문사서의 부재, 운영자의 비전문성과 과다한 업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장서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장 자료의 질도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장서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고 관리되는지 장서개발 과정을 파악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을 분석하여 실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체계적인 장서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작은도서관, 장서, 장서개발, 장서관리, 공공도서관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ge of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in small libraries through case study to eleven small libraries in Yeongnam region. Library collection is the primary element of a library and collection development is the starting point of librarians' duty. The researcher recognized the problems observed in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in the case small libraries and discovered the widespread obstacles restraining the future development. Through the visits and observations, aging book collections, lack of diversity in the form of materials acquired, imbalance in subject distribution, and the imbalance in circulation are identified. Suggestions are to be added: collection development duty can not be fulfilled without proper support by local governments. While small libraries penetrate into peoples' territory, Public libraries should seek to enhance and improve their service orientation as well as a cooperative network with these small libraries.

Keywords: Small Library,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Public Library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chang@pusan.ac.kr)

• 접수일: 2011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1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 I. 서론

최근 도서관계 안팎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이슈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편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미흡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는 생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적 관심을 받고 있다. 2010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작은도서관 통계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이미 3,71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립 공공도서관 규모의 5배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가장 강력한 유인은 물리적 접근성과 신간위주의 장서구성,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거리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즉, 지역에 밀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독서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주요한 움직임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원문서비스 보급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국회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안」과 「작은도서관 지원법안」 등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2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들은 여전히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놓여 있으며,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폐관이 반복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관내에 총 152개의 작은도서관이 존재하지만 2011년 한 해 동안에 폐관한 작은도서관이 19개에 이른다.<sup>1)</sup>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하나의 원인으로 ‘장서’에 주목하였다. 즉, 작은도서관이 과연 ‘장서’를 기본에 두고 장서를 매개로 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책을 기본에 둔 본질적인 서비스보다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적어도 1,000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장서를 중심으로 한 명실상부한 도서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 크다 하겠다.

그러나 장서개발의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고 장서수집이 정례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전국의 작은도서관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충실하게 구성된 장서를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장서개발 업무가 대부분 비전문가인 운영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짐

1) “정부 설립 장려만 해놓고 나 몰라라 ... 운영난에 폐관속출: 사라지는 작은도서관.” 국제신문, 2011. 10. 13.

으로써 정보, 사상, 계몽이라고 하는 도서관 장서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2010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작은도서관의 1관당 소장 자료 수는 약 4,500여권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체 작은도서관의 50% 정도인 1,687개관만이 조사에 참여하여 집계된 결과로 실제 평균 소장 자료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구입비 또한 660개 도서관이 평균 47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매우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sup>2)</sup> 또한 70%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이며,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위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작은도서관 설립주체나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의 이해관계나 관련성에 의하여 특정 분야의 장서가 대폭 구비될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의 정비가<sup>3)</sup> 필요하다는 지적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의 과정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총 11개의 사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 자료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 장서개발 영역에 있어서의 주요 현황을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작은도서관의 의의

### 1. 작은도서관의 개념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에 해당하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공중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일치하는 서비스를 하는 공중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규모로서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때 규모는 ‘도서관법 제 5조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09년 도서관법 개정 이전 공공도서관이 유사활동 범주로 정의되면서 ‘문고’의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문고’로 등록된 시설을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시설 및 자료 기준 또한 문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2) 도서관연구소,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 연계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 도서관연구소, 2010).

3) 김홍렬,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2010. 12), pp.191-20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4호)

서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역주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현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정범주를 비교하면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표 2>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2010년 도서관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1관당 평균 면적은 약 114m<sup>2</sup> 평균 좌석 수는 29.7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낮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자체 단위 및 정책단위에서 정책의 범주에 편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에 이루어진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내 운영담당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약 56%이고, 사서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약 10%에 불과하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교육 경험도 각각 13%, 12%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법, 조항 정비를 통해 정책 범위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력, 운영시간, 관리 및 지도(지자체 등록 및 등록취소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기반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곳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 2. 작은도서관의 발전 배경

작은도서관이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마을문고를 시작으로 1980년대 - 90년대의 노동도서관, 그리고 2000년대의 어린이도서관 등의 흐름을 이어 발전해 왔지만,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문화관광부 사업인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즉, 2004년 6월 문화관광부의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 : 문화비전 21]에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이 제시되면서 2006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국립중앙도서관내의 작은도서관진흥팀의 신설과 더불어 년 30억원의 복권기금이 지원되었다.

이후 작은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고, 2009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이 권장되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지면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의 하나로 국고지원(일반회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작은도서관은 2010년 말 기준 3,719개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75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신설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법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에 공공간행물을 우선 공급하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립근거와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작은도서관들도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 3.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

작은도서관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다.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라서,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라서 소장자료의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연구들이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연구소의 보고서는 작은도서관을 발달시기별로 1960년대 임대섭에 의해 설치된 마을문고에서부터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과 주민도서관, 종교시설문고, 어린이도서관, 공공시설내 작은도서관, 그리고 2002년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한편 유명희 등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sup>5)</sup>

4) 도서관연구소, 전게서, pp.3-15.

5) 유명희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수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pp.24-26.

〈표 3〉 작은도서관 유형

유형		특징	
공립	직영	•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후 직접 운영하는 유형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시스템으로 기능	
	위탁	법인위탁	• 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유형 •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
		주민자율운영	•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후 주민협의체(주민자치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유형이다
사립	개인/지역주민	• 개인이나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모아 운영하는 도서관 • 개인이 자기소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공동주택	•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아파트 시공업체가 조성하거나 자치단체 보조에 의해 공간이 조성된 후 주민협의체에 의해 운영	
	종교단체	• 교회나 사찰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새마을회		• 새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거나 개인이 자치단체에 설립 등록한 후 새마을회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다 • 새마을회는 자치단체에서 새마을 문고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일부를 지원함
		복지시설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보육원,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일부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시민단체	• YMCA, YWCA, 여성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각종 유형의 작은도서관들을 가능한 한 고루 선정하고 방문 조사하여 유형에 따른 편차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 Ⅲ. 조사결과 및 분석

#### 1. 자료수집

2004년 이후 작은도서관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장서 개발이라는 특정의 업무와 기능을 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세부적인 기능을 분석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존립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은도서관이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폐관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연구들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주민들의 일상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와 기능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공공도서관과 구별되는 인식이나 요구를 지니지 않고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그저 똑같은 ‘도서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만난 많은 이용자들은 문고나 작은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서라는 구체적인 매개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11개의 작은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이 된 작은도서관 모두를 각 1회 - 3회 방문하여 시설 규모, 예산(자료구입비) 규모, 인력 현황, 장서 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에 머무르는 동안 서가의 자료를 직접 관찰하고 대출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자료수집 수준, 장서구성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관찰하였다. 또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리자, 자원봉사자, 순회사서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한 유형을 달리하여 선택되었는데, 이들은 연구자가 방문조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북 '마'시와 경남 '바'시에 소재한 작은도서관들이다. 조사의 대상이 된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의 현황

지역	구	작은도서관명	소장장서수	연간자료구입비	운영인력	1일 평균 이용자	운영형태
부산광역시	가구	A작은도서관	3,700권	1백20만원	운영자(계약직) 2명 자원봉사자 30명	30명	주민자치
		B도서관	6,073권(비도서 150점포함)	2백만원	계약직 2명 (시설 소속)	50명	아동보호시설 부설/ 지역아동센터
	나구	C쌩지 작은도서관	7,000권	5백50만원	자원봉사자 100명	80명	부산교육청지정 쌩지도서관
		D작은도서관	6,000권	1백92만원	자원봉사자 20명	45명	지역복지관 부설 부산교육청지정 쌩지도서관
	다구	E작은도서관	8,000권	8천만원	계약직 2명 자원봉사 10명	80명	공립(위탁)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울산광역시	라구	F아파트문고	1,600권	30만원	자원봉사자 10명	50명	아파트(주택법에 의해 설립)
		G아파트문고	4,383권	60만원	자원봉사자 23명	60명	아파트(주택법에 의해 설립)
경상북도	마시	H작은도서관	5,193권(비도서 17점포함)	5백만원	운영자(계약직) 1명 자원봉사자 23명	150명	공립(직영)
		I작은도서관	4,309권	5백만원	운영자(계약직) 1명 자원봉사자 4명	37명	공립(직영)
경상남도	바시	J작은도서관	9,600권(비도서 20점포함)	3백만원	계약직 1명 자원봉사자 8명	100명	공립(주민자율운영)
		K아파트 새마을문고	8,483권	3백만원	계약직 1명 자원봉사자 16명	85명	새마을문고

## 2. 조사결과 및 분석

### 가. 자료구입 예산

조사결과,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와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자료구입비의 규모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작은도서관 가운데 도서관구입비가 가장 작은 규모인 곳은 울산광역시의 F 문고로서 1년에 30만원의 예산이 전부였다. 이곳의 경우 별도의 자주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이 유일한 재원이었다.

반면 부산의 E 작은도서관의 경우 2011년 도서관구입예산이 8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다. E 작은도서관은 기업의 후원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작은도서관은 기업의 캠페인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7년부터 M방송사가 펼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이 그것인데, M 방송사는 매년 관련 생방송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홍보자료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의 후원을 유치함으로써 2011년 현재 약 30억의 후원금이 지원되었으며 이렇게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전국에 약 20여 개소에 이른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성된 E 작은도서관은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담하고 쾌적한 시설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의 책임은 관할 구청이 맡고 있지만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사단법인과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E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관할 구청에서는 조례를 설치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자료구입비가 개관장서의 확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작은도서관 개관시 부족한 장서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올해 다소 과다할 정도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번듯한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지원에 인색한 전시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사실,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로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희망사항이었다. 이러한 점은 비단 재정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 그리고 지자체의 공모사업 등 외부 지원사업에 의하여 자금과 인력,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운영자들은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을 예측하고 올해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간이나 비품을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예상대로 자료구입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지원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정부

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지만, 결국 향후의 운영비와 지속적인 자료 구입에 드는 예산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설립자금과 개관장서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는 자생의 노력을 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도서관 운영은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재정재원 중 자주재원 항목인 시도지원금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부금과 같은 대안재원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의 지원이나 캠페인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지만 자료구입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시·군·구 예산으로 이는 도서구입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주로 대내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지역 내 숙원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역량은 부족할 밖에 없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교육청이 평생학습마을과 썸지도서관 지정을 통하여 자료구입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마을은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3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 1-2개의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고 매년 장서, 비품,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경우 인력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파견하고 있다. 또한, 썸지도서관은 부산시교육청이 독서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작은도서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하는데 10평 이상의 공간과 업무용 컴퓨터 1대, 도서관 운영 전담인력 1인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 또는 기관에게 도서관 인테리어를 시공해 주고, 장서 500권을 지원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3개의 평생학습마을과 27개의 썸지도서관이 있는데 조사대상 작은도서관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C썸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는 매우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많은 작은도서관이었다. 이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된 지역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2층의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에 참여하는 등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도서관으로서, 썸지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자료구입비 100만원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으로부터 350만원의 자료구입비와 15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 썸지도서관으로 지정된 D 작은도서관은 ○○원이라는 아동보호시설에 속한 도서관이다. 이 시설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는 ○○원 건너편에 있던 시설 종사자들의 숙소로 쓰던 주택을 개조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시설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개방하였다. 독지가인 시설 원장의 지원과 ○○원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교부금에서 자료구입비가 지출되었지만 최근 썸지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시교육청 평생교육팀으로부터 약 200여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한다. 아래 표는 부산광역시의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구분	쌈지도서관			평생학습마을		
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부터 운영 시작</li> <li>• 2007년 이후 신규 증설 중단</li> <li>• 현재 23개관 운영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부터 운영 시작</li> <li>• 현재 13개관 운영 중</li> </ul>		
구성 및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 : 부산시 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li> <li>• 지원 : 시민도서관</li> <li>•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이 쌈지도서관 개설기관 지정 및 운영희망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li> <li>- 공간, 운영 인력, 기본 시설 등은 운영 희망기관에서 부담</li> <li>- 2008년부터 부산시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 시작 (1관당 3,000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 : 교육청 소속 10개 공공도서관</li> <li>• 지원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li> <li>•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1~2개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li> <li>- 공간은 지정기관에서 제공</li> <li>- 해당 공공도서관이 장서를 구입, 정리, 제공하며 일반운영비 부담</li> <li>- 운영인력은 2개 평생학습마을을 제외한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파견</li> </ul> </li> </ul>		
예산 (관당 평균)	2009년 7,613천원	2010년 7,610천원	2011년 7,992천원	2009년 8,037천원	2010년 10,700천원	2011년 100,64천원
시설(연면적)	관당 평균 82.05m <sup>2</sup>			관당 평균 152.50m <sup>2</sup>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 별 담당자 1명</li> <li>• 자원봉사자 : 관당 평균 5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별 담당자 각 1명</li> <li>• 평생학습마을 별 관리자 1명 내외</li> </ul>		
장서	관당 평균 6,694권			관당 평균 7,320권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 사용</li> <li>• 쌈지도서관 간 네트워크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LAS ver 3.6 프로그램 사용</li> <li>• 평생학습마을 간 네트워크 불가</li> </ul>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평균 개관시간 : 7시간</li> <li>• 주당 평균 개관일 : 5.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평균 개관시간 : 4.5시간</li> <li>• 주당 평균 개관일 : 4.4시간</li> </ul>		
서비스/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열람 및 대출</li> <li>• 어린이/독서 관련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지도, 논술, 건강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li> </ul>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커뮤니티 운영 : 3개관</li> <li>• 운영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소개 : 3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각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소개</li> </ul>		
연간 이용자수 (관당 평균)	2009년 5,229명	2010년 5,799명	2011년 4,531명 ('11. 9. 현재)	2009년 9,552명	2010년 9,566명	2011년 8,959명 ('11. 9. 현재)

나. 초기 장서 구축 문제

E 작은도서관의 경우에서 보듯 예산의 지원이 개관장서에 치중하는 문제는 지자체 재정이 지원되는 작은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울산의 F 문고와 G 문고는 아파트 관리동 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주택법에 의하여 2006년 이후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최근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형의 작은도서관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주택법(제 21조)과 주택법 시행령(제 22조), 그리고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제 55조 5항)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건물면적 33m<sup>2</sup>(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을 보유한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은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설치하는 건설사가 하지만 운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다. 지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다가 2006년 이후부터는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 2부터 제21조의 4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5장 복리시설

제55조(경로당 등) 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략〉

한편 이렇게 작은도서관(문고) 설치와 개관시점에 1천권의 장서를 구비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장서의 질 측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G문고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당시 번듯한 가구와 1천권의 장서가 있었지만, 건설사가 인근 서점으로부터 저가의 재고도서들만을 헐값에 사들여 1천권 장서규모만 맞추고 개관한 탓에 실제 도서관 장서로서는 부적절한 자료들만으로 도서관을 개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자료를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자료를 채워넣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7년 아래의 고시에 의하여 아파트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의 개관장서 규모뿐 아니라 도서의 가격에 대한 규정을 정해 개관장서의 총 가격을 8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후략〉

이렇게 작은도서관 개관시점에 구축된 초기장서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 독지가의 뜻이 아닌,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매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문제였다. 초기 개관장서를 아파트 주민들의 기증도서로 구축한 작은도서관들도 여러 곳 있었는데, 이렇게 기증받은 도서들은 실제로 작은도서관들 장서 가운데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다. 자료선정의 문제

(1) 자료선정 도구

조사대상 작은도서관 가운데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을 지닌 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E작은도서관 한군데 밖에 없었다.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한 순회사서가 1주일에 하루씩 지원을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C작은도서관은 지역복지관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전체 소장 장서 6,000권 가운데 어린이자료가 8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주된 이용자들도 인근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관 내에 위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예산지원도 많은 편이고 운영인력 또한 자원봉사자와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에 의한 인력도 지원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주로 복지관의 일상적인 자원봉사를 맡으면서 도서관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기존 선정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은도서관의 자료선정에 주로 활용되는 선정도구를 조사한 결과, 추천도서목록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작은도서관 블로그나 회원전용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접수하는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목록,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신문 잡지와 블로그 등의 서평을 참조한다고 하는 대답이 많았다.

그 외에 독서관련 블로그나 카페, 관내 교육기관의 추천도서, 대형서점에서 제공하는 서평, 도서관이 자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출판사의 신간목록, 인터넷 서점의 신간도서목록 등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 [www.readread.or.kr](http://www.readread.or.kr)), 읽는행복([lechat.pe.kr](http://lechat.pe.kr)),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schoollibrary.eduhope.net](http://schoollibrary.eduhope.net)), 어린이도서연구회([www.childbook.org](http://www.childbook.org)) 등이 제공하는 권장도서 목록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그리고 알라딘과 예스24 등의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위주로 자료를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자료선정 주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선정하는 주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수시로 선정하거나 월 1회 이상 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료구입 주기가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월 1회 단위 선정이 많고 경우에 따라 정기자료 선정과 희망도서 선정을 별개로 진행하는 도서관이 많은데, 연 2회~12회의 다양한 주기로 정기구입을 위한 선정업무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희망도서 구입 등을 위해 최소 주 1회의 주기를 포함하여 수시로 선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에서 도서선정에 대한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운영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자선정위원회 등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라. 자료구입의 문제

작은도서관의 강점은 친밀성이다. 운영자들은 도서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료구입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이유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료 구입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구입을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계약 체결상의 문제점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자료예산이 적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국내 인터넷 서점의 기업고객 전담 부서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고 있었다. 지역 서점을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작은도서관에서는 구입할 도서의 목록을 작성한 후 자

료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도서구입 총액을 대상으로 1년간 구입할 자료의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도서구입 예산이 적다보니 할인을 위주로 도서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자료를 구입할 시기에 임박하여 한꺼번에 구입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책들이 구입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구입해야 할 좋은 책들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평상시에 자료구입을 위한 목록을 작성해 준다. 신문의 복색선이나 출판사 팸플릿을 활용하여 그때그때 목록을 채워 나간다.”(도서관운영자 A 씨)

“도서를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보고 할인을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택한 뒤 주문을 한다. 도서납품업체에서 서지작업 및 라벨 부착 작업까지 마쳐서 납품하기 때문에 자료정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소장인을 찍어 대출해 줄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도서관운영자 C 씨)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작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서점이 많았고 전문유통업체를 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수집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 IV.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개선 방안

### 1. 자료구입 예산 측면

작은도서관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관을 하였다 하더라도 초기 개관당시에 장서를 갖추어 번듯하게 개관하는데만 주력할 뿐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F 문고와 G 문고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거나 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아파트 부녀회와의 협조를 통해 재화용품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로 자료구입비 30만원을 충당할 뿐이다.

작은도서관 역시 경로당과 같이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문화복지 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운영비와 난방비,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최근에는 식비도 지원받고 있는 반면, 대다수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서류상, 형식상으로만 존재할 뿐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자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또한 공동주택 사용검사 및 승인 시에 작

은도서관 설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 작은도서관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력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방치하거나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애물단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주택법 등 관련 규정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자료구입비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이 권장사항이 되면서 일 년 단위 계획 내에서도 상반기에 자료구입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지역 분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지정제도를 계층적으로 시행하여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속에서 자료선정과 수집 등 기술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전방위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2. 자료구입 과정 측면

좋은 책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존의 장서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의 규모가 많지 않은 작은도서관에서는 신간 구입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일실물수서시스템(DAS: Daily Acquisition System)이나 원위크시스템(One Week System)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일 또는 주 단위로 도서납품업체가 신간도서를 작은도서관에 제공하면, 담당자가 도서를 직접 확인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출판과 거의 동시에 도서가 도착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이를 직접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서평이나 도서목록에만 의존하여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직접 보고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과 신간도서가 발행되는 즉시 도서관에 납품되어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작은도서관은 자료구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도서관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보급 사업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였다. 경남 바시 J작은도서관과 K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주택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된 도서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자료를 분기별로 구입한다. 매월 구입하여 신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구입목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거쳐 자료

를 입수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작은도서관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기증하는 '문학나눔'의 지원으로 보충된 자료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올해는 도서구입자금이 없어 새 책을 구입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택배로 도착한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를 보고 학생들, 주민 모두가 반가워 탄성을 질렀습니다.”(도서관 자원 봉사자 K씨)

한편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학술원이 선정한 우수학술도서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즉,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로 문학류의 가벼운 읽을거리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지난번 도착한 도서는 학술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소설, 동화, 시집이 많아서 좋았다.”(도서관 자원 봉사자 P씨)

“우수문학도서는 일반 분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고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도서관 자원 봉사자 K씨)

### 3. 운영체제 측면

부산광역시 U구에 위치한 A작은도서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9월 20여 가정이 모여서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로 마을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된 순수 주민조직이다. 마을도서관을 계기로 구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영화상영 등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 현재의 공간을 마련하여 개관하였고, 2009년 6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공간은 11평 규모이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말마다 모여서 공사를 하고 책장을 만들어 2008년 6월 개관하였다.

전체 장서는 약 3,200여권이며 지역 주민 가운데 유급 운영자 2명을 지정하여 이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월 이용자들은 평균 400명 정도이고 월간계획표에 의해서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엄마들을 위한 그림책모임,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모임인 “또래모임”, 애니메이션 함께 보기, 초등학생 독서치료 <책과 만나는 나>, 그리고 엄마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데 다음과 같다.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1. \*\*작은도서관에는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구성
  - 가. 지역대표 명
  - 나. 작은도서관 운영자
3. 자료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도서관자료구성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 나. 각종 목록을 검토하거나 직접 자료를 검토한 후 구입할 자료를 정한다
  - 다. 자료기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자료의 선정기준
  - 가. 도서관의 목적
  - 나. 이용자의 요구
  - 다. 자료의 지적 내용
  - 라. 자료의 물리적 특성
  - 마. 예산
  - 바. 기존 자료에 대한 평가 및 자료구성 계획
5. 수서방법
6. 장서점검 - 폐기여부

H작은도서관과 J작은도서관은 Y시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이다. Y시에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 현재 2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향후 20개의 작은도서관이 더 개관할 예정이다. 2008년 5월부터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12개, 2010년에 6개관의 작은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장서는 2,500권에서부터 많게는 6,000권 정도까지 되는 도서관도 있다.

이곳에서는 공공도서관들이 분담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기증도서를 비롯하여 도서구입을 늘여 나가면서 독서진흥 행사,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시민 누구나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향후 40개관까지 확대하여 지역 도서관망(Library network)을 형성토록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Y시의 작은도서관들은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보니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가장 작은 곳이 63m<sup>2</sup>(19평)인 반면 규모가 큰 곳은 333m<sup>2</sup>(100평)에 이르는 곳도 있다. 시에서 운영자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간의 운영체제상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지원체제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었다.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경우에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존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구입 예산 지원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전담 전문 인력도 지원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

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겨두는 것은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문 인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 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거의 비슷한 경험담과 이론적인 교육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운영자들의 불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장서는 지역과 국가의 지식 기반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자원으로 도서관의 존재의의는 장서로부터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서를 구축하고 보존, 전승하는 것이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재정, 정책 등의 이유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일상 생활권 가까운 곳에 뚝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지리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작은도서관들은 장서와 인력의 측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작은도서관은 현행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공공도서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비해 접근성은 떨어지나 작은도서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많은 자료와 인력,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일상적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적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자료 제공을 통한 정보, 사상, 계몽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이 확대되면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점차 위축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증설되면서 작은도서관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가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건립 확대가 바람직하다. 공공도서관은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복합 정보·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을 분관화함으로써 유기적 장서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작은도서관 수가 확대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들도 지원 대상으로 적극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구분하지 못한다. 열악한 작은도서관이 주변에 존재하면 오히려 공

공도서관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다.

요컨대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변성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작은도서관 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지원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 연계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도서관연구소, 2010.

김홍렬.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10. 12), pp.191-209.

유명희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수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1.

한국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